

청소년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9. 16.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 제출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상정 및 의결: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5. 9. 16.)

2.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계약해지와 청소년의 보호, 복지 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기간 만료(2025. 12.. 31.字)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인력현황	운영법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상화로 420 (상인동) 상화로 406 (상인동)	4,124.88㎡ (연면적) 6,353.93㎡ (연면적)	27명 (관장 1명)	계명문화 대학교
청소년 상담복 지센터	달서구	학산로7길 39 (월성동)	411.8㎡ (연면적)	13명 (팀장 1명)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성서	계대동문로11길 33 (신당동)	276.67㎡ (연면적)	7명 (센터장 1명)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성서센터 ·월배센터	서당로 30 (신당동) 학산로7길 39 (월성동)	358㎡ (연면적)	8명 (팀장 2명)	
청소년쉼터		와룡로10안길 11 (본동)	529.96㎡ (지상 4층)	9명 (소장 1명)	대구YWCA

나.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포함)

-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 청소년의 정서함양 교육
- 청소년의 상담활동
-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등 수련거리 발굴육성
- 청소년의 체력단련 및 능력개발
-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 각종 체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의 개인·집단·전화·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 자료 수집 및 제공
- 청소년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정)

○ 청소년쉼터

- 가정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정상복귀 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숙식제공), 상담 및 선도활동
- 가출예방에 관한 사업
- 집단상담, 개별상담 및 교육사업
- 사회봉사 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
- 기타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포함): 3년(2026. 1. 1. ~ 2028. 12. 3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년(2026. 1. 1. ~ 2030. 12. 31.)
- 청소년쉼터: 5년(2026. 1. 1. ~ 2030.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4.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포함)의 계약해지(2025. 7. 8. 계약해지결정 통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은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제1항은 청소년 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위탁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탁운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관은 지하1층·지상 3층의 청소년수련관 건물과 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중 지하1층, 지상1층, 야외시설 등을 관리하고, 관장 1명을 포함한 27명의 직원이 청소년 활동·교육, 교양 강좌, 지역주민 체육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상 2층의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과 지상 2층의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을 관리하면서,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직원이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인터넷 중독 상담프로그램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록학생 265명, 별도 인력 8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 청소년쉼터는 지상 4층의 청소년 쉼터 건물을 관리하고, 소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가출청소년과 위기가정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는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또한 각각 3년과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등 수탁자선정방식이 적법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운영실적 및 방법을 관리·감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약: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